

의안번호	2111580
의 퇴 인	심상정의원
회 답 일	2021.08.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안 제16조제3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 설치에 따른 비용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57억원, 연평균 11억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안 제16조제2항)	11	11	11	12	12	57	11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3항)	3
3. 추계 결과	4
[참고자료 1] 전국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5
[참고자료 2]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	6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0억 6,900만원, 2026년 12억원 등 5년 동안 총 56억 6,300만원(연평균 11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안 제16조제3항)	11	11	11	12	12	57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이동지원센터 설치(안 제16조)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제2항)
-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이동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3항)
- 국가 또는 도(道)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8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이동지원센터가 미설치된 곳¹⁾은 충청북도 1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 이어서, 기존에 설치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센터 운영비를 추산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고용 인력은 21명, 인당 평균 운영비(연간)는 4,960만원(2020년 기준)으로 함
 - 기 설치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국가도 재정부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이 결정되지 않아 재정부담 비율은 적시하지 않음
 -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 협의 하에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²⁾ 전망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3한 후부터 실시한다는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 대상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

1) 지방자치단체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참고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명목임금상승률	1.7	2.4	2.6	2.8	2.9	3	3.1

소 설치 시 필요인원에 운영비를 곱하여 추산

○ 구체적인 추계산식은 다음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음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센터 필요인원} \times \text{1인당 운영비}_t$$

이때, t 는 2022년~2026년

- 센터 필요인원 = 광역이동센터 평균 인원 21명
 - 1인당 운영비 $_t$ = 광역이동센터 1인당 평균운영비(연간)는 4,960만원(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2.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2항)

□ 추계 대상은 2021년 8월 기준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충청북도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

- 현재 충청북도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이므로, 기 설치된 광역시도의 운영비용을 참고함
-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는 평균 21명의 콜센터 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인당 연간 평균 운영비는 4,960만원으로 나타남
 - －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콜센터 직원과 센터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는 센터 직원당 평균 운영비용을 적용
 - － 자체 운영중인 경기도를 제외한 6개 도지역의 평균 인원은 21명, 연간 평균운영비는 9억원 수준(인당 평균 4,960만원)

[표 2] 광역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도	운영방식	운영인력(명)			연간 운영비용	연간 평균 운영비(인당)
		콜센터직원	운전자	인력합계		
경기도	자체운영	-			80	34.6
강원도	위탁운영	16	-	16	554	47.1
충청남도		21	-	21	990	49.8
전라북도		24	-	24	1,196	70.0
전라남도		20	-	20	1,400	42.8
경상북도		18	-	18	770	49.6
경상남도		29	-	29	1,439	49.0
평균		21		21	918	49.6

자료: 국토교통부

-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표 3]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인원(a, 명)	21	21	21	21	21	-
운영비단가(인당)(b)	51	52	54	55	57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a×b)	1,069	1,099	1,130	1,164	1,200	5,6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0억 6,900만원, 2026년 12억원 등 5년 동안 총 56억 6,300만원(연평균 11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및 운영	1,069	1,099	1,130	1,164	1,200	5,663	1,1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자료 1] 전국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³⁾

구분		운영방식	운영인력(명)			연간 운영비 (백만원)	인당 평균 운영비 (백만원)
			안내 (A)	운전 (B)	계 (A+B)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67	721	788	58,901	75
부산광역시		위탁운영	21	147	168	15,711	94
대구광역시		위탁운영	20	145	165	18,500	112
인천광역시		위탁운영	20	165	185	18,017	97
광주광역시		위탁운영	16	124	140	12,593	90
대전광역시		위탁운영	14	106	120	10,693	89
울산광역시		위탁운영	23	63	86	6,427	75
세종특별자치시		위탁운영	4	22	26	1,370	53
경기도	광역센터	자체	—	—	—	80	—
	32개 시·군	위탁운영	168	1,254	1,422	82,188	58
강원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16	0	16	554	35
	20개 시·군	위탁운영	18	174	192	8,461	44
충청북도	13개 시·군	위탁운영	29	137	166	7,456	45
충청남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21	—	21	990	47
	16개 시·군	위탁운영	20	156	188	8,866	47
전라북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24	—	24	1,196	50
	15개 시·군	위탁운영	18	208	226	9,404	42
전라남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20	—	20	1,400	70
	23개 시·군	위탁운영	33	206	229	9,948	43
경상북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¹⁾	18	—	18	770	43
	24개 시·군	위탁운영	33	196	227	9,319	41
경상남도	광역센터	위탁운영	29	0	29	1,439	50
	19개 시·군	위탁운영	19	416	435	21,627	50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	8	83	91	8,366	9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3)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구매 보조금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년 국고보조비율: 서울특별시 40%(대당 16.8백만원), 그 외 시·도 50%(대당 21백만원)
- 2021년 국고보조비율: 서울특별시 40%(대당 18.4백만원), 그 외 시·도 50%(대당 23백만원)

[참고표 1]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 2020~2021년

(단위: 천원, 대)

구분	2020년 국고 지원		2021년 국고지원	
	예산액	지원대수	예산액	지원대수
합계	5,250,000	259	4,779,400	210
서울	756,000	45	202,400	11
부산	420,000	20	575,000	25
대구	84,000	4	299,000	13
인천	—	—	552,000	24
광주	—	—	—	—
대전	84,000	4	230,000	10
울산	84,000	4	207,000	9
세종	—	—	23,000	1
경기	42,000	2	598,000	26
강원	630,000	30	253,000	11
충북	399,000	19	253,000	11
충남	630,000	30	161,000	7
전북	378,000	18	184,000	8
전남	546,000	26	506,000	22
경북	483,000	23	322,000	14
경남	546,000	26	368,000	16
제주	168,000	8	46,000	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4)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1.4.)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문지은
연 락 처	02-6788-4645
	mtsophia@nabo.go.kr
